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의거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(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·입주권 전매를 포함)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'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' 의무화 되었으므로, 6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세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 1호의 3서식] <개정 2022.2.28.>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plit.go.kr)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소(법인소재지)		(휴대)전화번호			
① 자금 조달 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원			
		④ 증여·상속 원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			
		[]부부 []직계존비속(관계: []그 밖의 관계())	[]보유 현금 []그 밖의 자산(종류:))			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	⑦ 소계 원			
① 자금 조달 계획	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	주택담보대출	원		
			신용대출	원		
			그 밖의 대출 원	(대출 종류 :))		
	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미보유 []보유 (건)				
		⑨ 임대보증금 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 원			
		⑪ 그 밖의 차입금 원	⑫ 소계 원			
[]부부 []직계존비속(관계: []그 밖의 관계())	원					
⑬ 합계	원			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	원			
	⑮ 계좌이체 금액		원		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	원		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	원			
	지급 사유 ()					
⑱ 입주 계획	[]본인입주 []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년 월)	[]임대 (전·월세)	[]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		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⑨번 기재 시 체크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·제7항·제9항·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제출인 (서명 또는 인)						